



인도네시아 Tax Info 2021 년 9 월호

COVID-19 대응관련 직원 대상 지불 비용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2021 년 8 월 5 일 인니 국세청(DGT)은 COVID-19 기간 동안 직원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공식 확인서 번호 ND-183/PJ/PJ.03/2021(ND-183)을 공표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출을 했으나 해당 비용의 세금 공제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다.

ND-183 은 COVID-19 기간 동안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은 직책에 관계없이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비용에는 COVID-19 검사 장비, COVID-19 예방에 필요한 보조 물품(예: 마스크와 손 소독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원 백신 접종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ND-183 은 그러한 비용이 직원에 대한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제 21 조 직원 소득세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In this issue:

1. [Tax treatment of employee-related expenses in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clarified](#)
2. [DGT clarifies approach to verifying Value Added Tax \(VAT\) invoices to determine creditable input tax](#)
3. [Luxury-goods sales tax \(LST\) borne by government facility for sales of vehicles updated](#)
4. [Implementing regulation for changes to LST on goods other than vehicles issued](#)

Customs Focus:

5. [Amendment to administration of bonded zones](#)

DGT 는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결정을 위한 세금계산서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함

2021 년 8 월 20 일 DGT 는 부가세 세금 계산서 확인에 대해 통합 접근법을 제공하기 위해국세청훈령 번호 SE-45/PJ/2021(SE-45)을 발행함.

부가세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세는 아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매입 부가세로 공제 가능함.

- a. 부가세법 제 9 조(8)항에 규정된 비용과 관련 없음. (예: 부가가치세 세법상 납세의무 법인(Pengusaha kena pajak(PKP))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과세 용역 구매 등)
- b.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부가세법 제 13 조(5)항에 명시된 형식 기준을 충족함. (예: 부가세 세금계산서 상 판매자 정보가 바르게 기입 등)
- c.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내용 (실질) 기준을 충족함. (예: 과세대상 재화 또는 과세용역 내용이 사실인 경우 등)

실제로 세무 조사관들은 세무조사 중에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해오고 있는데 위에 언급된 기준을 검증하는 것 외에도 세무조사관은 판매자가 등록된 세무서에 부가세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절차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전 매뉴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절 부터 시작 되었다. 인니는 현재 온라인 및 동기화된 부가세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이러한 검증 관행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실제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SE-45 는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위의 a 항목부터 c 항목까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자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에 관계없이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하고 있으며 또한 SE-45 는 해당 거래에 대한 내용(실질) 확인을 위해 현금 흐름, 물품 또는 서비스 흐름, 문서 흐름 확인 및 DGT 정보 시스템을 통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확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SE-45 confirms that provided a VAT invoice satisfies the criteria for a creditable VAT invoice, the VAT invoice is creditable regardless of the verification result from the seller's tax office.

차량판매 관련 정부부담 사치품판매세 혜택 업데이트

자동차 산업의 소비수요 및 구매력 유지를 위해 재무부 장관(MoF)은 2021 년 9 월 13 일 규정 번호 120/PMK.010/2021(PMK-120)을 공표 2021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특정 유형의 차량 구매 관련 정부부담 사치품 판매세를 인상했다. 이 혜택은 규정 번호 31/PMK.010/2021(PMK-31)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규정 번호 77/PMK.010/2021 로 수정되었음 (2021 년 4 월호 및 2021 년 7 월호 Tax Info 참조).

PMK-120 은 정부 부담 사치품 판매세율을 아래 같이 조정함:

차량 유형 (디젤 또는 준디젤)	세율	(정부부담 사치품 판매세)	
		PMK-31	PMK-120
실린더 용량 최대 1,500cc 인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2021 년 4 월 1 일 ~ 5 월 31 일) 100% (2021 년 6 월 1 일 ~ 8 월 31 일) 25% (2021 년 9 월 1 일 ~ 12 월 3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2021 년 4 월 1 일 ~ 5 월 31 일) 100% (2021 년 6 월 1 일 ~ 8 월 31 일) 100% (2021 년 9 월 1 일 ~ 12 월 31 일) (변동)
10 인 미만 차량(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단축 구동 시스템, 실린더 용량 1,500cc 이하	10%		
10 인 미만의 차량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단축 구동 시스템 및 실린더 용량(1,500cc 부터 2,500cc 까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2021 년 4 월 1 일 ~ 8 월 31 일) 25% (2021 년 9 월 1 일 ~ 12 월 3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2021 년 4 월 1 일 ~ 8 월 31 일) 50% (2021 년 9 월 1 일 ~ 12 월 31 일) (변동)
10 인 미만 차량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 제외), 양축 구동 시스템 및 1,500cc 부터 2,500cc 까지의 실린더 용량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21 년 4 월 1 일 ~ 8 월 31 일) 12.5% (2021 년 9 월 1 일 ~ 12 월 3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21 년 4 월 1 일 ~ 8 월 31 일) 25% (2021 년 9 월 1 일 ~ 12 월 31 일) (변동)

PMK-120 에 따른 정부부담 사치품 판매세율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발효되며 해당 일자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된 부가세세금계산서의 경우 PMK-120 에 의해 개정된 변경 사항을 수정 반영해야 하며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초과 부가세는 환급해야 한다.

또한 PMK-120 은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발효되는 하이브리드 및 기타 유형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관련 2019 년 규정번호 73(2021 년 규정 번호 74 에 의해 개정됨) (PP-73)에 상관 없이 PP-73 에 따른 차량 판매도 PMK-120 에 따른 혜택이 적용됨을 확인함. (2021 년 7 월 Tax Info 참조).

차량 이외 상품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변동 시행령 공표

2020 년 10 월, 인니 정부는 차량 이외 사치품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개정을 위해 2020 년 규정번호 61(PP-61)을 공표함. PP-61 은 사치품 판매세 과세 대상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함. 또한 PP-61 은 관광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호화 요트 수입 및 인도 관련 사치품 판매세 면제를 포함함.

PP-61 시행령(규정 번호 96/PMK.03/2021) (PMK-96)은 재무부장관이 공표했으며 2021 년 7 월 26 일부터 시행됨.

PMK-96 은 사치품 판매세가 적용되는 차량 이외의 사치품에 대한 새로운 목록을 20%~75% 범위의 세율로 제공한다.

PMK-96 에 의거 다음 사치품의 수입 및 인도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는 면제됨.

- a. 군용 화기 및 탄약
- b. 군용/상용 특정 항공기
- c. 공영/국영의 인원수송을 위한 대중교통 크루즈, 유람선 및 기타 선박, 여객선 요트; 및
- d. 관광사업용 요트

상기 a~c 의 사치품 수입 또는 인도시 부가세 미징수/면세 혜택이 부여된 경우 사치품 판매세 면세 혜택이 자동으로 부여됨.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자 또는 구매자는 수입 또는 인도일 이전에 사치품 판매세 면제 증명서(Surat Keterangan Bebas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SKB PPnBM))을 받아야 함. 관광사업용 요트 수입 또는 인도시 사치품 판매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SKB PPnBM 이 필요함. 또한 PMK-96 은 SKB PPnBM 신청 절차 관련 세부정보 제공을 통해 사치품 판매세 면제 혜택의 이용 및 관련 제한과 제재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사치품 판매세 적용 거래 납세자는 PMK-96 이 해당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함. 차량 인도시 사치품 판매세는 PP-73 에 의해 별도로 규정됨. (2021 년 7 월 Tax Info 참조).

For import or deliveries of yacht for use in the tourism business, an SKB PPnBM is required to benefit from the LST exemption facility.

관세 포커스

보세구역 관련 규정 개정

관세청(DGCE)은 규정 번호 PER-19/BC/2018(PER-19)의 개정안으로 2021 년 8 월 9 일부터 발효되는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번호 PER-9/BC/2021(PER-9)을 발행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 PER-19 규정을 추가/개정함.

개정 및 추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	Previous regulation (PER-19)	New regulation (PER-9)
<p>다음과 같은 관세 지역 외부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 비축 구역 • 자유지역 • 특별 경제 구역; 및/또는 • 정부가 지정한 기타 경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물품 반입은 아래 형태의 혜택을 받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세 유예 - 소비세 면제 - 수입제세 미징수(Pajak Dalam Rangka Impor(PDRI)), 및/또는 -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미징수. • 해외납세자(Subjek Pajak Luar Negeri(SPLN)) 소유한 물품의 반입은 규제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으로 수입되고 보세구역에서 먼저 가공 또는 조립되어 수출될 예정인 원자재, 보조 재료 및/또는 포장 또는 포장 보조재를 포함하여 물품이 수출될 때까지 보세구역내 보관되는 경우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에 대해 조세 혜택이 제공된다. • 위에 언급된 물품은 보세구역 간의 인도 과정 및/또는 임시 반출을 제외하고 보세구역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p>관세 지역 외부 원산지인 물품을 사용 목적 수입을 위해 보세구역에서 관세지역내 기타 장소(TLDDP)로 반출</p>	<p>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의 반입 관련 규정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내 사업자는 반입 시 조세 혜택이 제공된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가공품 및 조립품 포함)의 수입세, 소비세, 소비제세, 및/또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를 정산해야 하며 정산된 소비제세 및/또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을 TLDDP 로 반출 시 소비제세 및/또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가 부과된다.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는 세금납부증명서를 이용 세관신고서 등록 전 물품 수령자가 징수 및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납부 세금은 공제 가능함. • 수입세, 소비세, 소비제세 및/또는 부가세 또는 사치품 판매세는 물품 반출 세관 신고서 등록시 납부해야 한다. 지연납부 발생시 보세구역내 사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됨.
<p>TLDDP 에서 관세 지역내 기타 장소, 기타 보세 비축 구역, 자유지역, 특별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물품의 반입에 대해 소비세 면제 및/또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미징수 혜택이 부여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으로 수입되고 보세구역에서 먼저 가공 또는 조립되어 수출될 예정인 원자재, 보조 재료 및/또는 포장 또는 포장 보조재를

조항	Previous regulation (PER-19)	New regulation (PER-9)
<p>구역; 및/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타 경제 구역 등 보세구역으로 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은 규정지 않음. • 미징수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처리에 대한 규정 없음. 	<p>포함하여 물품이 수출될 때까지 보세구역내 보관되는 경우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에 대해 조세 혜택이 제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언급된 물품은 보세구역 간의 인도 과정 및/또는 임시 반출을 제외하고 보세구역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 모든 보세구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구역내 사업자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반입시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부과 - 물품 반입시 미징수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에 대한 조세규정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의 사용 <p>상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징수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p>
<p>TLDDP 원산지인 물품을 사용 목적 수입을 위해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p>	<p>해외납세자소유 물품의 반출은 규정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의 경우 물품이 반출된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내 사업자는 반입시 조세혜택이 제공된 수입세, 소비세, 소비제세, 및/또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납부 의무는 물품 반입시 발생하며 세금공제되지 않음 • 지연납부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됨. 납부는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증빙을 사용해야 한다.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는 TLDDP 물품 수령자에게 해외납세자소유 물품 반출시 납부하며 세관신고서 등록 전 물품 수령자가 징수하고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가 첨부된 세금납부증명서는 공제 가능함.
<p>보세구역에서 TLDDP 로의 해외납세자 소유 물품 반출시 수입세, 소비세, 소비제세 및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계산 기준</p>	<p>해외납세자 소유 물품 반출 규정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세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물품 반출시 판매가격에 따른 관세가격 -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반출되는 상품의 분류; 및 - 수입 세관신고서 작성/등록시 부과된 수수료 • 소비세는 소비세 규정에 의거 계산됨. • 소비제세는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물품 반출시 판매가격과 관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됨.

조항	Previous regulation (PER-19)	New regulation (PER-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는 보세구역에서 TLDDP 로 물품 반출시 판매가격과 관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됨.
기타 조항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의무가 주된 납세지 선정된 경우 보세구역 허가에는 주된 납세지 선정 사업자/본사 및 지점/사무소 납세자번호(NPWP)가 포함된다. • 자본재가 4 년 이상 보세구역에 유지되는 경우 TLDDP 가 원산지인 자본재의 반출은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가 면제된다. • 저위험 프로파일의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내 사업자는 보세구역 관련 장관령 이행을 위한 보증신청서 제출관련 기업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 DGT 의 물품 반입 및 반출 관리를 위한 IT 인벤토리(IT Inventory)에 대한 액세스는 DGT 가 규정한 조항에 근거 IT Inventory 액세스할 수 있는 DGT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을 통해 수행된다.

관련 회사들은 보세구역내 사업활동 관련 사업의 흐름과 법적확실성 유지를 위해 PER-9 에 포함된 정책의 개정 및 추가 조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희 팀은 보세구역 소재 회사에 대한 세관 자문 및 리뷰 업무 제공은 물론 보세구역 허가 취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M&A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li Mardi Djohardi

alimardi@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Yan Hardyana

yhardyan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